

제7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센터 이용 어르신은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계약 만료 기간으로 한다. 급여 갱신시 이용계약서는 재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 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8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새희망데이케어센터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급여수가의 본인부담금 및 식자재, 간식비, 이미용비, 개인 이동 보조 물품등 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급대상자 요구물품 등의 비급여 수가는 수급 대상자가 부담한다.

3. 의료수급권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입소하며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획서에 표기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 한다.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구 분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1등급	39,810	53,360	66,360	73,110
장기요양2등급	36,850	49,420	61,480	67,720
장기요양3등급	34,020	45,620	56,760	62,570
장기요양4등급	32,470	44,070	55,210	61,000
장기요양5등급	30,920	42,500	53,640	59,450
인지 지원등급	30,920	42,500	53,640	53,640

월 이용료 계산법 = (1일 수가 x 이용일수 x 본인부담율 15%) + 비급여항목(식대 및 간식비)

식대 3,000 / 1식 간식비 1,500원 / 1일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본인부담금

구 분	부담금액 (상기 수가의)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의료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9 %
	의료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6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제9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관리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한 의무

제10조[계약의 해제]

- 1. 이용의 종결은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여 실시한다.
- 2. 기관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수급자에게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2)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기관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 3) 직원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시에 불응하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5)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3.수급자는 계약 해제하고자 기관에 통보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개인비품을 비워주어야 한다.
- 4. 계약의 종료
 - 1)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2)기관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3)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